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 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매 3년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직업교육훈련, 여성고용업종 진출,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misorand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8조(일자리창출지원)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조(유망직종 선정·지원)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인턴취업지원)

- ① 여성가족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사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 매칭 또는 전액 국고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부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사업비의 추계가 어려움.

○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6개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정사업 : 4개

(찾아가는 취업설계사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고용노동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사업 : 3개

(직업교육훈련,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일가정 양립지원)

나. 추계 결과

○ 2012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예산

사업내용	사업개요	계	지원액(천원)		비고
			국비	시비	
합계		1,996,793	1,421,623	575,170	
찾아가는 취업지원 (취업설계사)	30명	567,000	283,500	283,500	【국50:시50】 , 1인당 18,900천원
새일여성인턴제	175명	525,000	420,000	105,000	【국80:시20】 - 1인 300만원(50만원×6월), - 기존센터 30명, 신규센터 25명
일·가정양립지원	13개 사업	180,940	90,470	90,470	【국50:시50】 - 공모 - 복지관(2), 남구(3), 남동(2), 부평(3), 서구(2), 남동산단(1)
직업교육훈련비	23과정	423,853	423,853		【국100】 - 공모 - 복지관(4), 남구(4), 남동(5), 부평(4), 서구(4), 남동산단(2)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1개소	30,000	30,000		【국100】 - 공모 - 남구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사업	1개소	84,000	73,000	11,000	【국100】 - 공모 - 여성복지관(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42명	126,000	100,800	25,200	【국80:시20】 - 센터별 7명
새일센터 운영비	6개소	60,000		60,000	【시100】 - 새일센터 운영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기금포함) 매칭사업

3. 비용 추계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1,421	1,421	1,421	1,421	1,421	7,105
	소계	1,421	1,421	1,421	1,421	1,421	7,105
세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1,996	1,996	1,996	1,996	1,996	9,980
	소계	1,996	1,996	1,996	1,996	1,996	9,980
재원 조달		1,996	1,996	1,996	1,996	1,996	9,980
국 비		1,421	1,421	1,421	1,421	1,421	7,105
시비	소 계	575	575	575	575	575	2,875
	일반회계	575	575	575	575	575	2,875
	특별회계						
	기 금						

4. 작성자 : 건설교통위원회 이 재 병 의원